

#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0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외부변수의 위험이 상존하는 관광업계를 즉각 지원하고 향후 서울관광의 허브 기능을 할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비용을 적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
- 나.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해 별도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할 예정임에 따라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에서 건물 매입 비용을 삭제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을 “2024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연장함(안 제3조)
- 나.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에서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 비용을 삭제함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4. 4. 12. ~ 5. 2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이다현 (☎ 2133-2826)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 관광발전을”을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관련 비용 등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서울특별시”를 “시 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시”로 한다.

제11조제5항 중 “된다”를 “맡는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호 중 “해촉을 희망하는”을 “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직무 태만, 품위 손상 등”을 “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”로, “아니하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3분의 1이상”을 “3분의 1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 한다.

③ 회의는 대면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를 원칙으로 하되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<u>서울관광발전을 위하여 서울관광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u>	제2조(기금의 설치)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-----.</u>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
제5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 2. 3. (생략) ② (생략)	제5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 1. <u>시</u> 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략)  ② <u>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용</u> 2. <u>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</u>	제6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<u>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관련 비용 등으로 한다.</u>

한 제반 비용 등

제7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·수익성·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생략)

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 관광정책과장이 된다.

제1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

2. ~ 5. (생략)

6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4조(심의위원회의 개최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

제7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-----

----- 시 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시 -----

제11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맡는다.

제13조(위원의 해촉) -----

1. -----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----- 않다고 -----

제14조(심의위원회의 개최) ① --

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 
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(생략)

③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④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3분의 1 이상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회의는 대면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를 원칙으로 하되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④ -- 밖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 
재원 조성 필요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의 향후 5년간 일반회계전입금 규모 추계

※ '25~'28년 전입금 : '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추계

※ '29년 전입금 : '28년 전입금 규모 수준으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지출	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	서울관광플라자계정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	소계(a)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10,000,000
수입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10,0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국비		-	-	-	-	-	-
시비	지방세수입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10,000,000
	세외수입	-	-	-	-	-	-
	지방채 등	-	-	-	-	-	-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10,000,000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이다현 주무관(2133-2826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(사업관리기금)

- 외부환경 영향에 취약한 관광업계에 감염병, 외교 이슈 등 위기 발생 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매년 10억원 이상 조성

### 2. 서울관광플라자계정(적립식기금)

-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 제반 비용(96억원)
  - 조성 설계 및 감리(3억원), 조성 건축비(20억원-전기, 기계, 소방, 통신)  
인테리어(29억원), 시설관리비(22억원), 기자재구입 및 이전비(22억원) 등